

음악도서관 이용지침

■ 제정 : 2003년 4월 1일

■ 개정 : 2019년 8월 24일

■ 관리부서 :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음악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음악도서관은 각 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, 학생들의 학술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며, 음악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음악관련 일반도서, 연속간행물, 참고도서 및 지정도서, 악보, 비도서자료로 한정한다.

제3조(이용 자격) 도서관 규정 제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한하여 이용을 허가한다.

제4조(열람 및 이용) ① 음악도서관 열람시간은 학기중(월-금: 09:00-20:00), 방학중(월-금: 09:00-17:00)이며,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.

1. 시스템의 수리 및 보수 시
 2. 특강 수업 시
 3.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② 가방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사물함 열쇠를 받은 후 외부에 비치된 사물함에 보관하고, 휴대하지 않는다. 단, 악기, 도서, 필기구 등은 제외가 된다.
- ③ 검색/감상용PC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사용자가 많을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필요할 경우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음악도서관의 모든 시스템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가한다.
1. 시청각자료 열람은 음악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
 2. 검색용 PC 시스템은 음악도서관 소장자료의 검색
 3. 감상용 PC 시스템은 음악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

제5조(사용제한) 제 4조 ②항,③항의 각호를 위반할 시에는 즉시 이용을 제한한다.

제6조(실내대출) 비도서자료의 실내대출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- ① 비도서자료는 음악도서관내에서만 대출을 허가한다.
- ② 비도서자료 대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자료를 대출하고, 반납 시에 자료와 신분증을 교환한다.

제7조(관외대출) 실내대출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외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① 비도서자료의 관외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1.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직원
 2. 시간강사, 대학원생, 학부생은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신청서(별지 서식)를 첨부할 경우
- ② 비도서자료의 관외대출 기간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.
 1.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직원은 14일 5개
 2. 시간강사, 대학원생은 7일 3개
 3. 학부생은 2일 2개

제8조(변상) 대출 및 이용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상해야 한다.

① 자료의 파손 및 손상 시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되, 최신판이 있을 때는 최신판으로 변상

② 동일자료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중앙도서관 ‘분실자료 변상지침’ 제4조에 의거하여 금액으로 변상

제9조(기타) 기타 제반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8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